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11.

발의자 : 전혜숙 · 안규백 · 황주홍
이찬열 · 송옥주 · 조정식
변재일 · 박남춘 · 정재호
김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,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,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·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,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

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
시원의 사업에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).
- 나. 시험문제는 공개하며,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
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(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
제18조의 제목 중 “승인”을 “승인 등”으로 하고, 제18조 제목 외의 부
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- ② 시험문제는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,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
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사업) ①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</u> 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시험 계획 <u>승인</u>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시험 계획 <u>승인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험문제는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,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</u>